충청북도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 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41

제출년월일 : 1993. 7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대전엑스포 '93 참가를 위하여 외국참가자가 일시수입허가를 받아 취득하는 자동차와 국내에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여 본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하기 위함

□ 주요골자

- 면제대상
  . 대전엑스포 '93 참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대표 또는 운영요원등 외국 참가자가 엑스포 참가를 위하여
  . 세관장에 의하여 재반출 조건으로 일시 수입허가를 받아 취득하는 자동차와
  . 국내에서 취득하는 자동차

- 면제세목 : 취득세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9조

□ 기타 참고자료 (별첨)

충청북도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세계박람회(이하 "대전엑스포'93" 이라 한다)에 참가하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대표 또는 운영요원 등 (이하 "외국참가자"라 한다)이 대전엑스포 '93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호의 자동차로서 대전엑스포 '93 참가를 목적으로 세관장에 의하여 재반출 조건으로 일시 수입허가를 받아 취득한 자동차와 대전엑스포 '93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전엑스포 '93에 참가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사무소의 공용자동차
2. 대전엑스포 '93에 참가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의 정부대표 및 운영요원용 자동차

제3조(과세면제) 외국참가자가 취득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4조(사무처리의 위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당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5조(면제신청) ①외국참가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조례 시행당시 외국참가자가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참 고 자 료

o 지방세법

o 내무부 조례준칙

근 거 법 규

지 방 세 법 (부분발췌)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정직 · 성실하게 봉사한다."

내 무 부

우110-760 종로구 세종로77 중합청사 1407호 /전화 731-2510 (행)2510 /전송 733-2755

문서번호 세제13415-138

시행일자 1993.

경유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세정과장

선결	세정과장		지시	
접수	일자 시각		결재	
	번호	1242	공람	
	처리과			
	담당자			

제목 대전엑스포 '93참가외국정부대표등에대한과세면제조례(안) 시달

대전엑스포 '93참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대표 또는 운영요원등 외국참가자가 엑스포 참가를 위하여 재반출 조건으로 일시수입허가를 받아 취득하는 자동차 또는 엑스포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과세면제를 위한 조례(안)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포 시행하기 바람.

첨부 : 대전세계박람회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부. 끝.

내 무 부 장

차관	전결

수신처 내 [illegible]

○○ 도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세계박람회(이하 "대전엑스포'93" 이라 한다)에 참가하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대표 또는 운영요원 등 (이하 "외국참가자"라 한다)이 대전엑스포 '93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호의 자동차로서 대전엑스포 '93 참가를 목적으로 세관장에 의하여 재반출 조건으로 일시 수입허가를 받아 취득한 자동차와 대전엑스포 '93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전엑스포 '93에 참가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사무소의 공용자동차
2. 대전엑스포 '93에 참가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의 정부대표 및 운영요원용 자동차

제3조(과세면제) 외국참가자가 취득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4조(사무처리의 위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당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5조(면제신청) ①외국참가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조례 시행당시 외국참가자가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